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. 2. 8 선고 2017가단609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1. 25.

판결 선고 2018. 2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경남 함안군 C 대 157m²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1) 원고는 2017. 3. 7. 경남 함안군 C 대 157m²(이하 '원고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(원고 토지는 2013. 4. 5.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, 그 후 공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).

2) 피고는 원고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(이하 '피고 건물'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다(피고 건물은 미등기이다).

[인정 근거] 갑 제1, 3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21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건물을 철거하고, 원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그 부친이 약 50년 전에 원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고, 그 지상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피고 건물을 건축한 것이므로,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.

나. 판단

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건물 철거 등 청구에 항변할 수 있는 피고의 점유 권원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이흥주

별지